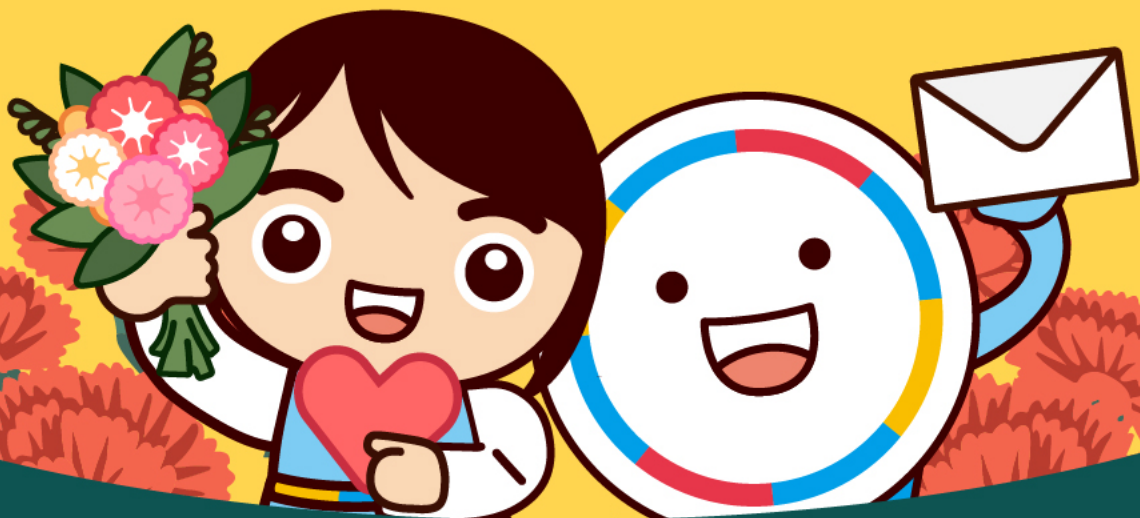


스승의날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Q&A



국민권익위원회

Q1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YES

예, 있습니다.

특pecially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2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NO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3



스승의날을 맞아 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케이크 선물을
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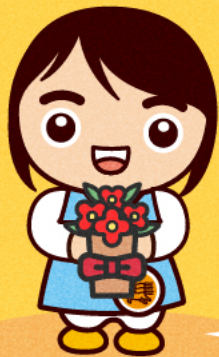
NO



안됩니다.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Q4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원 이내 선물을
해도 되나요?**

YES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학년 담임교사가
진급한 이후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나 지도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Q5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NO

안됩니다.

학생들의 성적, 평가, 진학 관련 추천 등 학교생활 전반을 관장하는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6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YES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7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NO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 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